

공 고

노·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'근로자 건강증진활동'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의 2014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2. 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- 다 음 -

1. 접수기간 : 연중 접수(재원 소진시 까지)
2.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제안서, 예산집행계획서) 1부
※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
3. 접수처 :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
4. 문의처 :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
※ 서울(02-828-1671), 부산(051-520-0586), 대구(053-609-0540),
중부(032-570-7261), 광주(062-949-8757), 대전(042-620-5634)
5. 세부내용 : 붙임자료 참조
※ 「근로자 건강증진활동」이란?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(고용부고시)

2014년 『노·사주도 건강증진활동』 비용지원 안내(요약문)

① 사업목적

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추진의지가 있는 중·소규모 사업장(연합체)을 대상으로 동 활동의 실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·사주도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촉진코자 함

② 신청사항

□ 신청자격 : 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노사주도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(추진코자 하는) 사업장

- ① 최근 5년 이내 작업관련성질환자 발생사업장(신청일 기준)
- ② 일반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, 요관찰자 다발 사업장
- ③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 발생사업장
- ④ 감정업무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사업장
- ⑤ 야간작업, 교대작업, 감정노동 근로자 다수 근무사업장
- ⑥ 취약계층(장년, 여성, 비정규직) 다수 근무사업장
- ⑦ 지역본부장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

❖ 형태별 건강증진활동 지원모델

| 지원모델 | | 구성의 예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Type1 (사업장) | Type 1-1 (사업장 단독추진형) | 300인 미만 단위 사업장 |
| | Type 1-2 (협력업체 지원형) | 모기업과 동일지역에 속한 협력업체 사업장 |
| Type 2 (연합체) | Type 2-1 (유사업종 연합형) | 택시조합, 화물자동차 조합, 음식점협동조합 등의 소속 사업장 |
| | Type 2-2 (지역 연합형) |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, 지역단위의 중소기업단체 소속사업장 |

□ 신청요건

❖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장

-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(이하 '노조')이 있는 경우, 노조와 사용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
-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,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

- 모기업-협력업체형(Type1-2)인 경우
 -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모두 지원대상인 경우 : 모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신청
 - 협력업체만 지원대상인 경우 : 신청사업장 중 대표사업장 및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신청

☞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공공단체)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※기업집단 소속회사 확인방법 : 공정거래위원회(www.ftc.go.kr)-기업집단정보포털-대규모 기업집단-지정현황-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

❖ 지원신청서 제출 연합체

- 기 구성되어있는 업종(지역)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, 구성된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
- 본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업종(지역)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, 구성된 사업장 중 대표사업장을 선정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

☞ 단, 사업장(연합체)에서 기 계약된 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활용하여, 동 사업과 연계한 비용지원 신청은 불가합니다.

③ 지원내용 및 지원사항

□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

모든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업무적요인과 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 관련성질환예방활동에 한함

- ❖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
- ❖ 감정업무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활동
- ❖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
- ❖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활동
 - ※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
- ❖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상담 및 업무적합성 평가
 - ☞ 구체적인 콘텐츠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“건강증진활동 예시” 참조

□ 공단 지원사항 :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

- ❖ 전문가 상담료, 강사료, 기자재 임차료, 장소 임차료, 보조제 구입비(금연보조제 구입비 등), 외부 전문교육과정 참가비, 교재제작비, 홍보물제작비 등 ‘예산단가(집행) 가이드라인’에서 제시하는 항목
 - ☞ 단, 자산취득비용, 현물제공비용 및 재료비 구입등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,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,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과 거리가 먼 순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.

❖ 지원한도

| 구분 | 사업장(연합체) 규모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50명 미만 | 50명~300명 미만 | 300명 이상 |
| 지원한도 | 160 만원 | 700 만원 | 2,000 만원 |

☞ 300명 이상은 연합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④ 접수기간 및 기타

□ 접수기간 : 2014. 2월부터 ~ 재원 소진시 까지(연중 접수)

□ 제출서류

- ❖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서(제안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포함) 1부 제출
- ❖ 신청서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 게시

□ 문의처 및 접수처 :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

▶ 지역본부 주소(연락처)

- 서울지역본부 :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5층 (전화 : 02-828-1674)
- 부산지역본부 :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(전화 : 051-520-0586)
- 대구지역본부 :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층(전화 : 053-609-0540)
- 중부지역본부 : 인천 서구 한빛로 15(가정동 491) (전화 : 032-570-7261)
- 광주지역본부 :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빌딩 8층 (전화 : 062-949-8757)
- 대전지역본부 :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 (전화 : 042-620-5634)

□ 기 타

- ❖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및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 게시된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첨부 : 2014년도 노·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상세계획 1부. 끝.

2014년 『노·사·주·도 건강증진활동』 비용지원 계획

2014. 2.

I. 사업 목적

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추진의지가 있는 중·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 활동의 실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·사주도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촉진코자 함

II. 지원대상 및 조건

1.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

모든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업무적요인과 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질환예방활동에 한함

- ①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
- ② 감정업무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활동
- ③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
- ④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활동
 - ※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
- ⑤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상담 및 업무적합성 평가

☞ 신청시점에서 게시되는 건강증진활동을 대상으로 하되, 신청 시 진행 또는 완료된 건강증진 활동 제외 (구체적인 콘텐츠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'건강증진활동 예시' 참조)

2. 공단 지원사항 :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

- 전문가 상담료, 강사료, 기자재 임차료, 장소 임차료, 보조제 구입비(금연보조제 구입비 등), 외부 전문교육과정 참가비, 교재제작비, 홍보물제작비 등 '예산단가 (집행) 가이드라인'에서 제시하는 항목

<지원항목 선정기준>

- 사업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추진시 애로사항 으로 조사된 항목으로 선정
- 예산부족, 프로그램시행 인력부족, 장소부족, 정보부족 등
 - ※ 직장에서의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 조사(2009,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)
 - ※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효과성 분석(2012,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)

<지원대상 제외항목>

- 물품취득·장비구입 등 자산취득성 비용, 지원대상자의 인건비 또는 시설 등의 현물 제공 및 재료비 구입등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
-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,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과 거리가 먼 순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

○ 규모별 지원한도 및 수행기간

| 구분 | 사업장(연합체) 규모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50명 미만 | 50명~300명 미만 | 300명 이상 |
| 지원한도 | 160 만원 | 700 만원 | 2,000 만원 |

※ 300명 이상은 연합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- 신청자는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을 당해연도 11.10까지 종료하되, 건강증진 활동 수행기간은 가급적 3개월 이상으로 함
- 연속하여 지원받은 경우, 총 지원기한은 3년(3회)를 초과할 수 없음

Ⅲ. 신청 및 대상자 선정

1. 신청자격

○ 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노사주도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(추진코자 하는) 사업장

- ① 최근 5년 이내 작업관련성질환자 발생사업장(신청일 기준)
- ② 일반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, 요관찰자 다발 사업장
- ③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 발생사업장
- ④ 감정업무 수행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사업장
- ⑤ 야간작업, 교대작업, 감정노동 근로자 다수 근무사업장
- ⑥ 취약계층(장년, 여성, 비정규직) 다수 근무사업장
- ⑦ 지역본부장(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)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

<형태별 건강증진활동 지원모델>

| 지원모델 | | 구성의 예 | 추진방법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Type1 (사업장) | Type 1-1 (사업장 단독추진형) | 300인 미만 단위 사업장 |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추진 |
| | Type 1-2 (협력업체 지원형) | 모기업과 동일지역에 속한 협력업체 사업장 | |
| Type 2 (연합체) | Type 2-1 (유사업종 연합형) | 택시조합, 화물자동차 조합, 음식업협동조합 등의 소속 사업장 | |
| | Type 2-2 (지역 연합형) |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, 지역단위의 중소기업단체 소속사업장 | |

2. 신청요건

○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장

- 근로자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(이하 “노조”)이 있는 경우, 노조와 사용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
-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, 노사 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
 - ※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,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후 노사대표 합의
- 협력업체 지원형(Type1-2)인 경우
 -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모두 지원대상인 경우 : 모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신청
 - 협력업체만 모두 지원대상인 경우 : 신청 사업장 중 대표사업장 및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신청

☞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(공공기관)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※ 기업집단 소속회사 확인방법 : 공정거래위원회(www.ftc.go.kr)-기업집단정보포털-대규모기업집단-지정현황-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

○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신청서 제출 연합체

- 기 구성되어있는 업종(지역) 단위의 연합형인 경우, 구성된 각 사업장의 노·사대표가 합의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
- 본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업종(지역) 단위의 연합형인 경우, 구성된 사업장 중 대표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할 수 있고 동 사업의 관리는 대표사업장에서 수행

3. 신청방법

○ 접수기간 : 2014. 2월부터 재원 소진시 까지(연중접수)

○ 제출서류

-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서(제안서 및 예산집행계획서) 1부 제출
-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 게시

○ 접수처 : 공단 지역본부

▶ 지역본부 주소(연락처)

- 서울지역본부 :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5층 (전화 : 02-828-1674)
- 부산지역본부 :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(전화 : 051-520-0586)
- 대구지역본부 :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층(전화 : 053-609-0540)
- 중부지역본부 : 인천 서구 한빛로 15(가정동 491) (전화 : 032-570-7261)
- 광주지역본부 :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빌딩 8층 (전화 : 062-949-8757)
- 대전지역본부 :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 (전화 : 042-620-5634)

☞ 공고사항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(전화 : 032-5100-717)

<신청서류에 포함되는 기본사항>

-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기입한 후,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는 노사 대표가 서명, 날인하여 제출
- 신청자는 건강증진활동 추진의 관리를 책임지고 진행과정에서 공단 지역본부 자문직원과의 창구역할을 할 책임자(실무자) 1인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명기
 - ※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실무자가 될 수 없음
- 제안서에는 명칭, 추진배경 및 목적, 추진일정(세부일정), 벤치마킹 및 전파 가능성, 자체평가,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
- 예산집행계획서에는 항목별로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, 신청자 부담항목과 지원요구항목을 구분하여 명시
 - ※ 요구항목은 지원대상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

4.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기준

- 공단 지역본부장은 관할지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한뒤, 공단 자문직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신청자에게 이관
 - 신청자격 유무, 중복수혜 여부, 예산의 적정성 및 지원한도액, 수행기간, 신청서 기재 오류사항 등
 -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,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, 과다 계상비용 조정 등

○ 심사기준

| 항목 | 심사기준 | 총점(100점)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적합성 | 본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작업관련 건강증진활동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| 50점 |
| 총실성 | 근무시간 중 활동시간 확보 등 사업 실행계획, 일정표, 예산계획 등이 얼마나 총실하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| 15점 |
| 기여도 | 작업관련 건강증진활동이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| 10점 |
|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| 추진활동 결과가 다른 기업, 동종 업종에 얼마나 전파, 활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| 10점 |
| 혁신성 (참신성) | 프로그램 내용이 작업관련 건강증진활동 제고에 얼마나 새롭고 의미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| 10점 |
| 기타 | 기타 해당 심의위원회 판단에 의해 정한 사항 | 5점 |

○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

- 지역본부장은 “노시주도 비용지원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)“를 구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(지역본부장)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
 - ※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접수된 ‘사업수행계획서’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 할 수 있음
- 심사점수 산정은 신청서별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집계한 후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계산
 - ※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
- 채용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, 총예산 중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사업장, 연합체는 참여 사업장(회원사)이 많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

IV.

지원협약 체결 및 변경

1. 지원협약 체결

-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역본부에서 필요시 사업장(연합체)를 방문하여 현지확인 후, 지원대상자간에 공식적으로 지원협약 체결
 - ※ 지역본부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협약을 체결하되,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규모 및 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
- 지원협약은 예산, 사업기간 및 방식,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협약서에 지역본부와 지원대상자간 서명, 날인 함으로써 체결됨

2. 지원협약 변경

- 건강증진활동 지원과정에서 추진내용, 지원기간, 예산 등 지원협약서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을 변경·조정할 수 있음
(정책용역사업에 관한 「과학기술부훈령」 제 10조 준용)
-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변경신청서를 문서로 지역본부에 제출
 - 협약당시 협약서상의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일반 경상경비 예산항목(사업 공고시 지원항목에 한함) 간 당초 지원결정금액의 20%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
 - ※ 단, 일정·장소·강사변경 등 일반적인 경미사항은 구두로 변경·조정
-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변경승인신청서를 지역본부에 제출하고, 지역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행
 - 협약당시 협약서상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경우
 - 협약당시 협약서상의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일반 경상경비 예산항목(사업 공고시 지원항목에 한함) 간 당초 지원결정금액의 20%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

V. 지원금 지급 및 보고사항

1. 지원금 지급방식

- 지원협약 체결이후, 지원대상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(지원금 지급요청서 제출) 사업시행일을 감안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(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 이내에 총 지원결정금액의 70% 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잔여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급
 - ※ 지원대상자가 선금급을 요청하는 경우, '지급보증각서' 첨부
- 대상 사업장(연합체)에서 선금급 지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경우, 위임 받은 기관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음
 - ※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인 경우, 지원금 지급요청서 '컨설팅 계약서'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, 잔여 지원금 신청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'세금계산서(계산서)'를 첨부

2. 지원금 관리

-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법인명의의 신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진행 기간 동안 지원금 입·출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함
 - ※ 법인명의 통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사업주(관리책임자), 노동조합 및 대표사업장 사업주 등의 명의의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
-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건강증진활동 운영과 관련해 지원조건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, 지출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 회계화일(엑셀양식)에 맞게 기록, 관리하되 근거자료를 남겨야 함
 - ※ 비용지출은 원칙적으로 전용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집행하되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집행
-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
- 지원대상자는 건강증진활동 진행 중 재정운용과 관련해 '사고'발생시 지역 본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해야 함
- 대상 사업장(연합체)에서 선금급 지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경우,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

3. 지원금 반환

○ 지원잔액 반환

- 지역본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최종지원금 지급 시 미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
- 지역본부에서 미사용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최종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, 지원대상자는 즉시 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통장에 이를 반환

○ 지원금 반환

- 지원대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원금반환
-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일부사업의 중단 및 폐지,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즉시 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통장에 지원금을 반환

4. 지원대상자의 의무

○ 보고 등의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, 완료보고서(2부)를 지역본부에 제출
- 사업완료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진행경과 및 사업실적, 예산계획 및 지출내역, 향후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함
-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지원대상자의 입·출금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
- 지역본부에서는 필요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
- 지역본부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근로자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

○ 기타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취지와 조건에 맞게 지원협약에 규정된 건강증진활동 수행기간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해야 함
-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후에도 회계관리 파일(기록물) 및 지출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존해야 함
- 지원대상자는 동일한 건강증진활동 내용으로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중복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음
- 지원대상자는 지원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, 지역본부 등의 방문지도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지원대상자의 과실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

VI. 지원 종료 및 중단·철회

1. 지원 종료

- 사업완료보고서가 지원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본부에서 최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협약 종료
- 제출받은 사업완료보고서 검토결과 계획 대비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보완기간 부여

2. 지원 중단 및 철회

- 다음의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
 - 건강증진활동 추진 중단,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
 - 공단에서의 지원으로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거나, 지원대상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활동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완료 3개월전까지 건강증진활동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
- 지원대상자의 과실로 지원을 철회하게 될 경우 지역본부에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

VII. 기타사항

1. 추진일정

| 내 용 | 추진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▪ 사업안내 및 별지 양식 홈페이지 게시 | '14. 2월 |
| ▪ 지원대상자 신청·접수 | '14. 2월 ~ |
| ▪ 지역본부별 심사위원회 개최 | 수시 |
| ▪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| 수시 |
| ▪ 공모사업 추진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| 연중(11월 까지) |
| ▪ 사업종료 | '14. 11월 |

2. 기 타

- 신청서류 등의 양식 등은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 게시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사업 추진절차



【붙임2】

2014년도 예산단가(집행) 가이드라인

□ 규모별 지원한도

| 구분 | 사업장(연합체) 규모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50명 미만 ¹⁾ | 50명~300명 미만 ²⁾ | 300명 이상 ³⁾ |
| 지원한도 | 160만원 | 700만원 | 2,000만원 |

※ 300명 이상은 연합체인 경우에만 해당

○ 지한한도 설정기준

- 규모별 한도(인)×근로자 1인당 기준금액(40,000원/인)×근로자 참여율(%)

¹⁾ : 50명 미만 : 50인×40,000원/인×80% = 1,600천원

²⁾ : 50명~300명 미만 : 300인×40,000원/인×60% = 7,200천원(≒7,000천원)

³⁾ : 300명 이상 : 800인×40,000원/인×60% = 19,200천원(≒20,000천원)

□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되는 사항(공통사항)

1. 조달청 게시가격

조달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「가격정보지」 나 조달청 홈페이지 「가격정보란」에 게시된 가격으로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

2.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(재경부 등록 기관)

한국물가협회(물가자료), 한국응용통계연구소(유통물가), 한국물가정보센터(물가정보), 한국공정가격협회(공정가격)

3.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

공공요금 등과 같이 물품이나 용역가격을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

4. 거래실례가격

-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
-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인정

5. 견적가격

유사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,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

□ 항목별 지원한도

1. 총괄표

| 구 분 | | 단 위 | 경상경비 | | 총 소요예산의 점유율 (권고기준) |
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분야 | 항 목 | | 지원한도(원) | 비고 | |
| 방문상담 또는 컨설팅 | ○ 의학 전문가 | 1일 | 247,000 | 전문가별 방문상담(컨설팅) 일정은 가급적 중복 되지않도록 계획 | 50% 이내 |
| | ○ 산업간호 전문가 | 1일 | 205,000 | | |
| | ○ 심리상담 전문가 | 1일 | 205,000 | | |
| | ○ 금연(간전음주)상담 전문가 | 1일 | 205,000 | | |
| | ○ 인간공학 전문가 | 1일 | 247,000 | | |
| | ○ 산업위생 전문가 | 1일 | 247,000 | | |
| | ○ 영양관리 전문가 | 1일 | 205,000 | | |
| | ○ 운동 전문가 | 1일 | 205,000 | | |
| | ○ uHealth 온라인 컨설팅 | 1인·월 | 35,000 | | |
| 발대식, 집체교육, (캠페인) | ○ 강사 수당(시내·외) | 1시간·일 | 150,000 | 소속직원 제외 | 20% 이내 |
| | ○ 강사 운임(시외) | 1인·일 | 40,000 | 항공 불인정 | |
| | ※ 지원한도(40,000원)를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(운임표 등) 제출시 실비 지급 가능 | | | | |
| | ○ 강사 숙박비(시외) | 1박·인 | 50,000 | | |
| | ○ 강사 일비(시내·외) | 1인·일 | 20,000 | | |
| | ○ 교재제작비 | 1권 | 10,000 | | |
| | ○ 장소임차료 | 1회 | 200,000 | | |
| | ○ 기자재 임차료 | 1회 | 300,000 | 프로젝터 등 | |
| | ○ uHealth 디바이스임차료 | 1인·월 | 35,000 | 사전교육,web서비스, 매월 레포트(우편),A/S포함 | |
| ○ 소비용품구입비 | 1회 | 300,000 |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| | |
| ○ 간식비(다과료) | 1인·일 | 1,000 | | | |
| 외부 전문화교육 | ○ 건강증진관련 외부 교육과정 참가비 | 1인 | 400,000 | 기준은 1명으로 하되, 근로자50인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가능 | 10% 이내 |
| 준비,평가, 자문회의, 간담회 | ○ 회의수당 | 1인·일 | 150,000 | 소속직원 제외 | 10% 이내 |
| ※ 시내인 경우 : 회의수당 지급가능(일비제외) ※ 시외인 경우 : 회의수당, 운임, 숙박비 지급가능(일비제외) | | | | | |
| 보조제 구입 등 | ○ 금연보조제 | 1인 | 50,000 | 패치(3주),껌(1주),사탕(1 주),지압기(1개) 포함가격 | 5% 이내 |
| | ○ 스트레칭로프 | 1개 | 3,000 | | |
| | ○ 운동매트 | 1개 | 10,000 | | |
| | ○ 만보계 | 1개 | 10,000 | | |
| | ○ 음주고글 및 다트 | 1개 | 300,000 | | |
| | ○ 염도계 | 1개 | 30,000 | | |
| | ○ CO측정기 마우스피스 | 1Box | 20,000 | 100개입/Box | |
| | ○ 심리검사지 | 1장 | 3,500 | | |
| | ○ 심리검사 응답지 | 1장 | 3,500 | | |
| | ○ 뇌심질환 간이검사 (콜레스테롤,혈당,요당 스틱, 란셋) | 1인·회 | 2,750 | | |

| 구 분 | | 단 위 | 경상경비 | | 총 소요예산의 점유율 (권고기준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분야 | 항 목 | | 지원한도(원) | 비고 | |
| 홍보물 제작 등 | ○리플렛(OPL) | 1장 | 1,000 | 교통카드 등 현금성 홍 보물품 및 인센티브지 원금 등 제외 (홍보물에는 공단 마크삽입) | 5% 이내 |
| | ○현수막 | 1장 | 80,000 | | |
| | ○X-배너(거치대포함) | 1개 | 100,000 | | |
| | ○포스터 | 1장 | 5,000 | | |
| | ○기타 자체제작 홍보물 | 1개 | 2,000 | | |

※ 방문상담(컨설팅)비용은 ‘예산집행계획서’에 ‘상담(컨설팅) 예정인원’등을 기재하고, 정산시 ‘상담내역’ 등의 증빙서류 첨부

※ 상기에 제시된 항목만 지원가능하며,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은 명확히 구분하여 ‘예산 집행계획서’에 기재하고, 정산시 각각 구분하여 ‘증빙서류’ 첨부

2. 지원 사업장(연합체) 소속 직원의 여비 지원한도(준정부기관 여비 집행지침 준용)

○ 지원 조건 : ‘건강증진 관련 외부 전문교육’ 출장시에만 적용

- 일비 및 식비 : 일비(20,000원/1일), 식비(20,000원/1일)

- 숙박비 : 50,000원/1일

- 교통비 : KTX 보통 운임(KTX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요금 적용)

※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는 가급적 공단 교육원에 개설된 “건강증진활동 리더과정”이수

※ 정산시 교육이수증 등 ‘증빙서류’ 첨부필요

3.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(준정부기관 강사료 집행지침 준용)
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금액 (시간당) |
|----|---|---------------|
| 1호 | 1.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공공법인 단체의 장 2. 대학 총·학장 및 대학원장 3. 국회의원 및 국회 전문위원 4. 언론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장 5. 경제인단체, 산업안전보건관련협회, 산업안전보건관련학회, 교육전문기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유관기관의 장 6.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급 이상 | 150,000원/시간 |
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금액 (시간당) |
|----|---|---------------|
| 2호 | 1. 정부 중앙행정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급 3. 대학교수, 부교수 및 전문대학 교수 4. 박사, 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, 변호사, 의사, 공인노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5. 언론기관의 논설위원, 국장급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임원급 6. 경제인단체, 산업안전보건관련협회, 산업안전보건관련학회, 교육전문기관의 임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관기관의 임원급 7.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의 임원급 또는 1,000인 미만 기업의 대표이사급 | 100,000원/시간 |
| 3호 | 1. 정부 중앙행정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장급(1~2급) 3. 대학 조교수 및 전문대학 부교수 4. 교육전문기관의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5. 언론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부장급 6. 상시 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의 부장급 또는 1,000인 미만 기업의 임원급 | 80,000원/시간 |
| 4호 | 상기 1호·2호·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| 70,000원/시간 |

4. 회의수당(준정부기관 지출예산 집행지침 준용)

- 준비, 평가, 자문회의 수당은 1일당 100,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, 결정금액 범위내에서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5. u-Health 온라인 컨설팅(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단가적용)

- 생활습관 경향분석을 위한 문진상담 : u-Health 디바이스 임차기간내 총 3회
 - ※ web 접근이 힘든 대상자의 경우 u-Health 온라인 컨설팅 전문가가 전화상담으로 지원
- 전화상담 : 2회/월 이상(운동전문가 1회, 영양사 1회)
- 동기부여를 위한 SMS 서비스 : 4회/주 이상
- 근로자별 맞춤형 건강정보 e-mail 서비스 : 1회/주

6. 컨설팅 용역계약비

- 사업장(연합체)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건강증진활동을 사업장(연합체)-기관간 컨설팅계약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, 지원금액은 상기 항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
 - 외부전문기관 소속 전문가가 발대식, 간담회, 교육 등에 참가하여 동일날짜에 방문상담(또는 컨설팅)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인건비성 경비는 추가 지급할 수 없음

7. 전문가 자격 및 노임단가 적용기준

| 구분 | 전문가 자격 | 해당 전문분야 경력 | 노임단가 | 비고*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의학 전문가 | ▪ 의사 면허 소지자 | 10년 이상 | 247,000/일 | 특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▪ 산업간호 전문가 | ▪ 산업전문 간호사 | -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▪ 간호사 면허 소지자 | 10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4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 |
| ▪ 심리상담 전문가 | ▪ 정신보건 전문요원(정신보건 간호사, 정신보건 사회복지사), 의료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상담심리사 또는 EAP 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10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| 4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
| ▪ 금연(건강음주) 상담 전문가 | ▪ 금연전문교육사, 금연상담사,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교육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10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| 4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
| ▪ 인간공학 전문가 | ▪ 기술사 | - | 247,000/일 | 특급 |
| | ▪ 기사 | 10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4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 |
| ▪ 산업위생 전문가 | ▪ 산업기사 | 13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10년 이상 13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| 7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
| ▪ 영양관리 전문가 | ▪ 영양사 면허 소지자 ▪ 보건교육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10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| 4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
| ▪ 운동 전문가 | ▪ 생활체육, 운동처방사, 보건교육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10년 이상 | 205,000/일 | 고급 |
| | | 7년 이상 10년 미만 | 187,000/일 | 중급 |
| | | 4년 이상 7년 미만 | 140,000/일 | 초급 |
| | 4년 미만 | 118,000/일 | 초급숙련 | |
| ▪ u-Health 온라인 컨설팅 전문가 | ▪ 간호,운동,영양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지원팀을 구성하여 온라인 컨설팅(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은 상기 적요 준용) | - | 35,000원/인·월 |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단가적용 |

* :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(통계청승인 제37201호, 2014년 1.1부터 적용)

* : 건강증진활동 분야별 전문가 자격조건에 ‘보건교육사’ 포함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17조)에 근거하여 반영

* : 전문가 자격 및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소속기관 “경력(재직)증명서” 등으로 확인하되, 부득이한 경우 “자격 및 경력확인서(별지)” 로 대체

【별첨3】

공단 지역본부 별 관할구역

| 공단 지역본부 | 소재지 | 관할구역 |
|---------|-------|---|
| 서울지역본부 | 서울특별시 | 강남구, 강동구, 강서구, 관악구,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서초구, 성동구, 송파구, 양천구, 영등포구 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성북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구, 중랑구 |
| | 춘천시 | 춘천시, 원주시, 양구군, 영월군,제군, 정선군, 평창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성군, 경기 가평군 |
| | 강릉시 | 강릉시, 삼척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 |
| 부산지역본부 | 부산광역시 | 부산광역시(강서구, 금정구, 남구, 동구, 동래구, 북구, 부산진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수영구, 연제구, 영도구, 중구, 해운대구, 기장군) |
| | 울산광역시 | 울산광역시(남구, 동구, 북구, 중구, 울주군) |
| | 창원시 | 사천시, 진주시, 창원시, 통영시, 거제시, 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산청군, 의령군, 창녕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양군, 함천군 |
| | 양산시 |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 |
| 대구지역본부 | 대구광역시 | 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동구, 북구, 서구, 수성구, 중구, 달성군),경산시, 영천시, 고령군, 군위군, 성주군, 청도군, 칠곡군 |
| | 포항시 | 경주시, 포항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 |
| | 구미시 | 구미시, 김천시, 상주시, 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봉화군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, 청송군, 칠곡군 석정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|
| 충부지역본부 | 인천광역시 | 인천광역시(계양구, 남구, 남동구, 동구, 서구, 부평구, 연수구, 중구, 강화군, 옹진군) |
| | 부천시 | 부천시, 김포시 |
| | 수원시 | 수원시, 평택시, 오산시, 용인시,안성시, 화성시 |
| | 성남시 | 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양평군, 여주군 |
| | 의정부시 | 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고양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강원 철원군 |
| | 안산시 | 안산시, 시흥시, 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 |
| 광주지역본부 | 광주광역시 | 광주광역시(광산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서구), 나주시, 목포시, 영광군, 장성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함평군, 신안군, 무안군, 영암군, 화순군, 장흥군, 강진군, 해남군, 진도군, 완도군 |
| | 전주시 |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정읍시, 김제시, 남원시, 완주군, 부안군,고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|
| | 여수시 |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보성군, 고흥군 |
| | 제주시 | 제주시, 서귀포시 |
| 대전지역본부 | 대전광역시 | 대전광역시(대덕구, 동구, 서구, 유성구, 중구), 계룡시, 공주시, 논산시, 보령시, 연기군, 금산군, 청양군, 부여군, 서천군 |
| | 청주시 | 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, 진천군, 증평군, 괴산군, 청원군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 |
| | 천안시 | 천안시, 아산시, 서산시, 당진군, 태안군, 예산군, 홍성군 |